

경북관광두레협력센터 인력 선발 공고

경상북도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지역전문가를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4월 1일

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



□ 선발개요

○ (활동기간) 2021. 4월(계약체결일) ~ 2022. 3월

○ (활동지역) 경북 일원

○ (활동내용)

- 경북관광두레협력센터 운영
- 관광두레 예비PD 교육 및 양성
- 신규 주민 사업체 발굴·육성 및 창업 지원 및 홍보
- 사후관리 주민사업체 관리
- 두레사업 홍보 및 정산 사무보조

○ (기타사항)

- 본 과업은 위탁용역으로 4대 보험 및 퇴직금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
- 근무지는 경북도청 신도시 내 경북관광두레협력센터(안동시 풍천면 소재지)
- 활동 세부사항은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세부운영지침 및 경북 문화재단 내부규정에 의함

□ 선발분야 및 자격요건

○ (선발분야)

선발(분야)	인원	자격기준(업무내용)	계약기간
업무총괄	1	• 관광두레사업 경력 보유자 (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업무 전반에 관한 조정·관리)	채용일로 부터 ~ 2022. 3월
기획·마케팅 팀장	1	• 관광두레사업 경력 보유자 (사업기획 및 성과, 추진방향, 홍보마케팅 검토 등)	
사업팀장	1	• 관광두레사업 경력 보유자 (주민사업체 육성 및 상품개발 등)	
관리팀장	1	• 주민주도 중간지원 행정 운영 관리 경력 보유자 (주민사업체 육성 및 상품개발 등)	
관리팀원	2	• 해당사항 없음 (행정, 센터 및 주민사업체 홍보지원 등)	

○ (자격요건) 대구·경북지역 거주자로 아래 사항 해당자

- 붙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지역제한 : 공고일 기준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·경북인 자

○ (우대사항)

- 관광두레사업 유경력자
- SNS 홍보마케팅 및 일러스트, 포토샵 활용 가능자

□ 전형방법

- 1차 서류 및 2차 면접

□ 응시원서 접수

- (접수기간) 2021. 4. 1(목) ~ 4. 13(화), 18:00까지

○ (접수방법 및 장소)

- 방문 또는 우편접수(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)
- 접수처 : (36849)경북 예천군 호명면 수변로 125 서진타워 4층
경북문화재단 문예진흥팀

- (면접심사) : 2021. 4. 15(목) 14:00, 경북문화재단 회의실

- 발표 면접(직무수행계획 등 발표 5분 이내)

※ 부득이한 사유로 면접일자 및 장소 변경 시 개별통보

- (합격자 발표) 개별통지

○ (제출서류)

- 지원신청서 각 1부(별첨양식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- 우대 대상자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※ 최종 합격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

□ 참고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기타 사항은 경북문화재단 문예진흥팀(054-650-2952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□ 결격사유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.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10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1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